

서울특별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춘대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604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임춘대 의원(1명)

찬 성 자: 고광민,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박성연, 윤영희, 이성배,
이원형, 이희원, 최민규
의원(15명)

1. 제안이유

- 금융과 정보기술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산업은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을 바탕으로 국내 핀테크 중심지로 부상했지만 상대적으로 글로벌 핀테크 허브로서의 역할은 부족해 핀테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핀테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유망한 국내 핀테크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서울시 핀테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핀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라.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핀테크산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핀테크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핀테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핀테크산업”이란 정보통신기술, 그 밖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신기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핀테크기업”이란 핀테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핀테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핀테크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핀테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핀테크산업 육성의 지원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핀테크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핀테크산업 관련 규제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4. 핀테크산업 행사와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핀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핀테크산업의 육성 등) 시장은 핀테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핀테크산업 시장 및 관련 기술의 조사·분석과 수집정보의 제공
2. 핀테크산업과 관련된 창업·경영에 관련된 상담·교육 및 정보 제공
3. 핀테크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4. 핀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박람회 및 기술 경연대회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핀테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3. 금융규제 관련 컨설팅 및 법률 지원
4. 국내외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
5. 핀테크산업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핀테크산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
 기 위하여 핀테크산업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
 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성과와 실적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핀테크산
 업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원

2.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핀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표창) 시장은 핀테크기업의 육성이나 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기본계획 수립)은 통상 내부인력을 활용하여 수립하므로 추가 비용소요 가능성이 낮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제6조(핀테크산업의 육성 등)	△	제1호의 핀테크산업 시장 및 관련 기술의 조사·분석과 수집정보 제공 관련 비용(그 외 사항은 기추진 ²⁾)이 발생하나 서울시 관련부서(경제실 금융투자과) 문의결과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객관적 추계가 어려움 ⇒ 다만 서울시 유사용역 ³⁾ 을 준용하여 대가를 추정할 시 총 35,000천원 (1회에 한함)정도 소요예상
3	제7조(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 등)	×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결과 기추진사업 ⁴⁾ 으로 확인됨
4	제8조(핀테크산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위원회 운영 비용이 발생하나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통상적인 사례를 토대로 자체 추계함(참고용) ⇒ 총비용 61,249천원 (연평균 12,250천원) 소요예상
5	제11조(표창)	×	통상 시민대상 표창은 부상을 수여하지 않아 비용발생요인 ⁵⁾ 이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미미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 1) **[고려사항]** 또한 통상 출연연구기관(서울연구원 등) 연구수행 결과물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음
⇒ 다만, 향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별도 용역 진행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현실점에서는 이를 확실할만한 합리적 정보가 적어 고려사항에서 제외함
- 2) **[기추진사업]** 서울시 경제실에서 현재 핀테크 산업 관련 각종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유선문의 및 각종자료)
○ 서울시 경제실 핀테크산업 관련 예산현황
- 2025년 <서울 핀테크 워크 개최> : 400,000천원
- 2025년 <금융전문인력 양성> : 230,238천원(핀테크아카데미 운영 170,000천원 포함) 등
- 3) **[유사사례 준용]**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2025년 <서울 디자인산업 실태조사> : 35,000천원
⇒ 산업시장 실태 및 통계조사라는 측면에서 볼 경우 사업의 유사성이 있고, 통상적 조사·분석 등 학술용역의 시장가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해당 사업을 준용하였으나, 핀테크 산업의 특수성에 의해 향후 추진될 조사분석 용역비용 실소요액과 추계액간 정합성이 낮을 수 있어 해당 금액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4) **[기추진사업]** 서울시 경제실에서 현재 핀테크랩을 운영하여 핀테크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유선문의 및 각종자료)
○ 서울시 경제실 핀테크기업 관련 예산현황
- 2025년 <서울핀테크랩 운영> : 8,044,491천원
- 2025년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 2,068,849천원
○ 안 제7조제1호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제2호 신용보증 또한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결과 해당 지원대상 자격요건에 부합할 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러한 점에서 볼 경우 기추진사업으로 판단됨
- 5) **[재정소요 영향 미미]** 통상 시민대상 표창의 경우 부상(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 참고)없이 표창장만 수여하기에 표창장 제작비(1인당 5,500원)정도의 소액만 소요(예외적으로 공무원 표창 시 일부 부상수여)되므로 서울시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안 제6조(핀테크산업의 육성 등)제1호에 따른 핀테크산업 시장 및 관련 기술의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 제공 관련 비용은 정책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현 시점에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 다만, 서울시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대가를 추정할 경우 **총 35,000천원**(1회에 한함)정도 소요예상
 - 안 제8조(핀테크산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따른 위원회 운영비용은 서울시 관련부서(경제실 금융투자과) 문의결과 현재까지 정해진 바 없어 서울시 통상적 사례를 토대로 자체 추계함

[참고] 핀테크산업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비용⁶⁾

○ 총비용 = **61,249천원**(연평균 12,250천원⁷⁾ × 5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 위원회 운영비용(안 제8조)		12,283	12,200	12,283	12,200	12,283	61,249

- (위원구성) 최대 구성인 15인 가정⁸⁾(시의원 1인 + 공무원 1인 + 민간위원 13명)
- (위원임기) 통상적 서울시 위원회 임기를 준용하여 위원 임기는 2년 가정
- (회의주기) 분기별 1회씩 연 4회⁹⁾ 실시 가정
- (소요금액) 참석수당 1인 200,000원¹⁰⁾, 업무추진경비 1인 30,000원¹¹⁾, 위촉장 제작비용 1인 5,500원¹²⁾전제
- (추계기간) 2026년부터 비용 발생, 시행일로부터 5년(2026년~2030년)
- 연평균 비용 ≙ 12,250천원 (① + ② + ③)

① 참석수당 비용 = 10,400천원
 = 수당단가 × 지급인원¹³⁾ × 연4회
 = 200천원 × 13명 × 4회

② 업무추진경비 = 1,800천원
 = 경비단가 × 지급인원 × 연4회
 = 30천원 × 15명 × 4회

③ 위촉장 제작비용 ≙ 83천원¹⁴⁾
 = 제작비용 × 인원
 = 5,500원 × 15명

6) 위원회 운영비용은 향후 정책수립 과정(민간위원 수, 위원구성, 회의개최 주기, 위촉장 수여주기 등)에서 달라질 수 있어 소요 비용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7) 12,249,8천원이나 절상하여 12,250천원으로 작성
- 8)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서울특별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과장(공무원) +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1명) + 그 외 민간위원(12명) 가정
- 9)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위원회의 운영)제2항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가정
- 10)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1. 위원회 참석수당

구분	단위	단가	비고
위원회	일당	기본료 : 150,000원 초과 : 50,000원	- 원격회의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불가

- 1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및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에 따라 **30천원 수준으로 적용**
 ⇒ 최근 50천원으로 변경(2024. 8. 27.개정) 되었으나 통상적인 업무추진 예산을 고려하여 30천원으로 적용
- 12) 통상적인 서울시 위촉장 제작비용 준용 / 위촉위원 임기에 따라 2년마다 발생 가정(전원지급 전제)
- 13)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수당)제2항에 따라 공무원(당연직 등)을 제외한 민간위원 13명에게 지급
- 14) 82,500원이나 절상하여 83천원으로 작성(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세출은 1,000원 미만이라도 절상)